

「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주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

1.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(안 제3조 별표2)

가. 개정 이유

-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,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

나. 개정 내용

-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학원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$5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에 $40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로 강화

다. 쟁점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률과 하위법령 간 정합성 유지

마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.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 명칭 변경(안 제3조 별표2)

가. 개정 이유

- 상위법령과 오염물질 명칭 통일

나. 개정 내용

-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(PM-2.5) 항목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초미세먼지(PM-2.5)로 변경

다. 쟁점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률과 하위법령 간 정합성 유지

마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